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토질 및 기초 / 흙물막이공

<기술의 요지>

CIP 흙막이 벽체의 철근망 매립 콘크리트 말뚝(CIP 말뚝) 위치에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시공하고 H빔 매립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

<범위>

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시공방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6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신원알피씨(이성원) ② 롯데건설(주)(하석주) ③ (주)한화건설(최광호) ④ (주)삼안(최동식) ⑤ (주)흥화(양승인, 이충규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781-8641 ② 02-3483-7823 ③ 02-2055-5404 ④ 02-6488-8345 ⑤ 02-3455-7572

2. 명칭 : L형 Rib-Deck과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(BBCM 공법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교량 상부구조물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교량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, 강재 브라켓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최외측 거더에 설치한 후 공장제작된 L형 Rib-Deck을 강재 브라켓 양단에 설치함과 동시에 L형 Rib-Deck에 기 매입된 철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교량 바닥판을 완성하는 공법이며,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, 해체 등의 고소작업이 필요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, 브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, 또한, 분리형 강재 브라켓은 캔틸레버의 시공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함으로써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

<범위>

교량 최외측 거더의 상면에 강재 브라켓(영구형, 분리형)을 설치한 후, 공장제작된 L형 Rib-Deck을 강재 브라켓 양단에 걸쳐지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타설로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바닥판을 완성하는 교량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(BBCM 공법)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- 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- 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  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  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  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-1호

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

「전파법」 제58조의5(시험기관의 지정 등),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77조의9(시험기관의 지정 등) 및 「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7조(시험기관의 지정 등)의 규정에 따라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9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시험기관명	지정사항 변경내용	지정일자
유엘코리아 주식회사 (지정번호 KR0161, 경기 수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 ○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1-2 KN-32(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/ 방송수신기류 제외) 342-2 KN-35(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/ 방송수신기류 제외)	'18. 1. 3.